

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3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·부당·부정·비리행위에 대하여 시장에게
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
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뿐만아니라 관계공무원의 문책사항이 발견될
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문책을 요구할
수 있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함

3. 참고사항

-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(안)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(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)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(생략)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<u>시정을</u>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 ③(생략)	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(현행과 같음) ② - - - - - - - - - <u>시정(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)을 필요로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, ③(현행과 같음)